파주시 4에이치(4-H) 장학금 지급 조례

[시행 2026.10.08]
(제정) 2026.10.08 조례 제2432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도시농업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528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에 따라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고 활동하는 파주시 4에이치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4에이치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회원의 자긍심을 높여 파주시의 농업・농촌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지원대상) 장학금은 선발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4에이치 활동을 한 회원으로서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추천) ① 파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4에이치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장학생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으로부터 추천 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 인원을 복수로 선정하여 지정 기일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학교장은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학교장 추천서 1부

2. 학교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 1부

3. 4에이치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제5조(선발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복수로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순서에 따라 평가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.

1. 시・군・구 단위 이상 4에이치 관련 대회에서 입상하였고, 4에이치 프로그램 수행경험 등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

2.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으나 4에이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사람

3. 시・군・구 단위 이상 4에이치 관련 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

4. 학업 성적이 우수한 사람

② 시장은 장학생 선발 결과를 학교장을 통하여 장학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않는다.

제6조(지급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장학금 선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7조(장학생의 의무) 장학생은 장학금을 지급 받은 후에도 학업과 4에이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급 정지)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4에이치 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
2. 퇴학, 정학, 제적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
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경우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2026. 10. 8. 조례 제2432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